PROPOSITION 65

COMPLIANCEASSISTANCE

2016년 8월 30일,
캘리포니아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
(the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 OEHHA) Proposition 65(Prop 65) 규정의 경고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2018년,새로운 Proposition 65 요구 사항

- 경고 라벨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은 2018년 8월 30일부터 발효되며, 발효가 되기 전에는 기존 및 새로운 라벨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op 65에 따라 직원이 10명 이상인 업체가 의도적으로 캘리포니아에 등재된 화학 물질을 노출시키는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화학 물질을 식별하지 못하는 기존의 Prop 65 경고는 새로운 개정 법의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WARNING Label 경고 문구 개정

- 소비자 제품 노출 경고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WARNING Label 예시:

(1) **WARNING** (2)&(3)

(4)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5)

- 소비자 제품 노출 시 약식 문구의 예시:

(1) **WARNING** (2)&(3)
Cancer -www.P65Warnings.ca.gov. (5) (6)

(1) **WARNING** (2)&(3)
Reproductive Harm -www.P65Warnings.ca.gov. (5) (6)

1. 경고는 노란색 삼각형 내의 검은색 느낌표 기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호 및 라벨을 노란색으로 인쇄하기 어려울 경우 흑백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기호는 '**WARNING**'문구의 왼쪽에 위치해야 하며, '**WARNING**' 문구 보다 커야 합니다.
3. '**WARNING**' 문구는 굵은 글씨와 대문자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4. 캘리포니아 OEHHA의 웹 링크를 포함 해야 합니다.
   - www.P65Warning.ca.gov

PROPOSITION 65

COMPLIANCEASSISTANCE

2016년 8월 30일,
캘리포니아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
(the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 OEHHA) Proposition 65(Prop 65) 규정의 경고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위반 시 제제:
위법 경과일 후 최대 USD 2,500/1 Day 부과 및 판매 중지

위법 사례:
Http://edition.cnn.com/2018/03/30/health/coffee-cancer-court-decision-warning-label-California/index.html

미국 LA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붙어있는 유해물질 규제 법령인 '캘리포니아 법령 65' 경고문
© 사진=AP연합 발췌

WARNING Label 경고 문구 예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이름 뿐 아니라 노출로 인한 피해가 나열되어야 합니다.
Ex) Cancer, birth defects, reproductive harm

- 등록된 발암물질이 포함된 경우 :

⚠ **WARNING**: Entering this area can expose you to chemical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from [name of one or more sources of exposure].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 등록된 독성물질이 포함된 경우 :

⚠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PROPOSITION 65

COMPLIANCEASSISTANCE

Proposition 65 준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 일 수 있습니다.
Proposition 65 의 전문가가 귀사의 규제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관리하기 쉽도록 모든 단계를 안내 할 것입니다.

STEP 1 Proposition 65 제품 검사 및 검토

Intertek은 제품에 함유되어 있거나 사용 이력이 있는 고위험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 및 그 유해물질 정보를 검토 합니다.

Proposition 65의 중요 단계(1단계)는 비 준수에 대한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분석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 된 물질은 기존 허용 수준 및 60-Day Notices를 통해 검토됩니다. 적용되는 물질의 허용 수준 및 상품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경우, 분석 시험의 근거로 사용 됩니다.

고객은 심사 및 검토에서 얻은 모든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레포트를 받게 됩니다. 이 레포트는 다음 단계(2 단계 - Proposition 65 분석)를 위한 테스트 계획으로 사용됩니다.

STEP 2 Proposition 65 분석

1단계 제품 스크리닝 절차에서 확인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품 분석을 수행합니다.

시험은 여러 물질에 관련된 엄격한 프로토콜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한번 테스트가 완료되면, 결과는 Proposition 65 검토(1단계)에서 정의된 기존 허용 수준과 비교 합니다.

화학물질이 기준 농도 이상으로 있거나 없는 경우, 제품의 화학 물질 농도가 Proposition 65 경고 라벨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출평가(3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은 모든 결과가 포함된 테스트 보고서를 받습니다. 위반 물질이 있는 경우, 특정 기준에 따라 합격/ 불합격 판정이 제공됩니다.

테스트 결과는 3단계 (노출평가) Proposition 65 Warning 요구 사항 결정에 사용 됩니다.

STEP 3 Proposition 65 - 노출평가 Warning 요구 사항 결정

제품에서 Proposition 65 화학물질이 검출된 경우, Intertek은 제품사용으로 인해 그 화학물질이 잠재적으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양을 추정하기 위해 노출평가를 진행 할 것 입니다.

이 노출 수준은 OEHHA에서 기재된 특정 화학물질 Safe Harbor Levels(SHLs)과 비교될 것 입니다.

Safe Harbor Level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Intertek은 관련된 No Significant Risk Level(NSRL: 발암성) 또는 Maximum Allowable Dose Level(MADL: 생식/ 만성 독성)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판단 합니다.

고객은 NSRL/MADL 개발 문서(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Intertek의 독성 전문가로 부터 자세한 노출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받으며, 제품에 대한 Proposition 65 Warning Label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규정 준수 여부를 결정할 분만 아니라 위반 통지를 받을 경우 소송 지원을 제공하는데 유용합니다.

California EPA

California EPA 는 안전한 음용수 및 독성 물질의 목적을 위해 “암 또는 생식독성” 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이 법안은 1986년에 국민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화학 물질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고의로 직원이나 시민을 화학 물질에 노출시키는 고용주 또는 Proposition 65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노출이 높게 포함되어 있으면 직원/소비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82 31 8069 3709
Rex.kim@intertek.com
www.intertek.co.kr